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942호 2013. 2. 8.(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29호 2013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8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1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88호 입법예고 ---------- 16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29호

2013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나. 신청기간 : 홀수 달(1, 3, 5, 7.11월) 1일~15일까지

(※ 부득이한 경우 수시신청 가능)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⑥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⑦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⑧ 그 외 ①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함.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부족시에는 예산확보후)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 **명예퇴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left[60+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 \right]$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

< 월 봉급액 산출예시 >

☞ **호봉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예) 봉급표상 봉급액 × 68%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78%×68.54% ×1/2 = [(연봉액-성과연봉) / 12×78%×68.54% ×1/2**
예) 연봉월액 × 78% × 68.54%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지급**

※ (단,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① (수시)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② (수시)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③ 자필 사직원 1부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소속기관기재란	⑫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 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수당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수당담당자가 기재함.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 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13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12.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2.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3.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8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도 강제처리 됨)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 81조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3년 02월 08일 ~ 2013년 02월 27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인천8너1544 외1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3년 02월 03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대신폐차산업(주)(☎562-2700),동일차량산업(주)(☎576-6633),경인오토리사이클링(주)(☎576-9922)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 부터 만료일까지.
바.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1부. 끝.

2013년 02월 0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체(폐차)공고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459	인천8너1544	라이노5톤	박 지 형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313,1/1태화아파트101동1405호(갈산동)	기아자동차㈜[서울 구로구 시흥동992-28]서인천세무서[부가],인천계양구청장[환보,세무],인천지방해양수산청[총무],인천부평구청장[환경,환위,세무,교통행정],근로복지공단이넌북부지사[징수] ,인천차량등록사업소[차량],인천서구청장[세무]
464	번호미상 (오토바이)	오토바이	미 상	미 상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88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2.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각종 민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개정 통보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의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이외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도록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의 수입증지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경우 거래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수입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단서 실설.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이외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별표1】 전부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60-41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6.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로 하고, “다만, 수수료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를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증지”를 “수입증지”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증지”를 “수입증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15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45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의 15종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30㎜로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하 한다)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과 동일하게 하되, 해당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수입증지 ----------. ②수입증지----------. ③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8조(수입금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판매공무원과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각각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 판매대금,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수입금을 늦어도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8조(수입금 납부) ----------.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 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0원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000원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000원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서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5,000원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교통행정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